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공인중개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·광고를 한 경우 중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,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·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함으로써 표시·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,

「공인중개사법」 개정으로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신설(법률 제19371호, 2023. 4. 18. 공포)되고,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이 강화(법률 제19423호, 2023. 6. 1. 공포)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규정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반영하고,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0. 00. ~ 2023. 00. 00.) 결과, 특기할
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같은 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”를 “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법 제47조의2제3항”을 “법 제47조의2제4항”으로, “법 제47조의2제2항”을 “법 제47조의2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7조의2제3항”을 “제47조의2제4항”으로 한다

별표 2 제2호라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서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·광고를 한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1호	
1)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·광고를 한 경우		500만원
2)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·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·광고를 한 경우		300만원
3)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		
가)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		400만원

· 광고를 한 경우 나)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·광고를 한 경우 다)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, 생활여건,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트리거나 은폐·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·광고를 한 경우		250만원 300만원
라. 중개보조원이 법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본인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. 다만,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51조제2항 제1호의4	500만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7조(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(이하 “신고센터”라 한다)에 같은 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(이하 “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”라 한다)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제출해야 한다.	제37조(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-- ----- ----- -----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(이하 “한국부동산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	⑦ ----- 법 제47조의2제4항----- 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⑧ (생략)	⑧ (현행과 같음)
제37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등록관청(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	제37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 ----- 제47조의2제4항-----

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13.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449